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조정 등〉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828호)

2025. 4.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2인
2. 제안일 : 2024. 11. 25.
3. 회부일 : 2024. 11.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법률 제18751호, 2022. 1. 11. 공포, 2022. 4. 12. 시행)으로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고(법 제62조의3), 종전 제62조의3이 제62조의4로 이동함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4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수사권한을 행사할 직무의 범위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8호).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규율하고 있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평생직업능력법”) 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직무범위에 ‘부정수급 범죄와 관련된 양벌규정’ 등을 추가하는 내용임(안 제6조제48호).

현행	개정안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1. ~ 47. (생략)	-----
48. 제5조제5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규정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되는 제117조에 규정된 범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에 규정된 범죄	-----
	1. ~ 47. (현행과 같음)
	48.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 및 제62조의4제1호에 규정

현행	개정안
49. · 50. (생략)	<u>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되는</u> <u>제62조의6</u> ----- 49. · 50.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현행법¹⁾은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평생직업능력법 제62조의3에 규정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 평생직업능력법 제62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에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리 근거가 신설(2017. 12. 19.)된 때부터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로 규정된 조항²⁾이었는데, 신설 당시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을 지원받거나 용자를 받은 자(이하 “일반 부정수급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후 두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음.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① 2020. 3. 31. 제62조의3제2호가 신설되어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

1)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5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훈련수당 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48. 제5조제5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규정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되는 제117조에 규정된 범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에 규정된 범죄

2) 당시에는 법 제명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었음. 2021년 8. 17. 개정으로 평생직업능력법으로 제명이 바뀜.

하거나 제공받은 자(이하 “부당한 경제적이익 제공자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었고³⁾ ② 2022. 1. 11.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자들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벌칙조항을 제62조의3으로 신설하면서 종전의 일반 부정수급자를 처벌하는 내용 등의 제62조의3이 제62조의4로 이동하였음.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17186호)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①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사업주·사업주단체등(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사업주단체등은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평생직업능력법 개정 연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2016. 1. 27, 일부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7186호, 2020. 3. 31, 일부개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8751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62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용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62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용자를 받은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자	제62조의3(벌칙)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용자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62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용자를 받은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자

□ 그런데 이러한 평생직업능력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이 법의 조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가 신설 당시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즉, 평생직업능력법 개정내용에 의하면 ① 2020. 3. 31. 개정에 따라 “부당한 경제적이익 제공자등에 관한 범죄”가 고용노동부등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었고 ② 2022. 1. 11. 개정 이후에는 조 이동에 따라 직무범위가 “일반 부정수급자에 관한 범죄” 및 “부당한 경제적이익 제공자등에 관한 범죄”(제63조의4)에서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자 등에 관한 범죄”(제63조의3)로 조정되었음.

<평생직업능력법 개정에 따른 직무범위 변경 내용>

2017. 12. 19. 신설	2020. 3. 31. 개정	2022. 1. 11. 개정
· 일반 부정수급자에 관한 범죄	· 일반 부정수급자에 관한 범죄 · 부당한 경제적이익 제공 등에 관한 범죄	·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자 등에 관한 범죄

○ 더욱이 직무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평생직업능력법 개정 이전에는 일반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등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할 수 있었던 반면, 현재에는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자 등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므로 일반 부정수급자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개정안은 평생직업능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부정수급 범죄와 관련된 양벌규정 등을 직무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일반 부정수급자에 관한 범죄”,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자 등에 관한 범죄” 및 “이와 관련되는 양벌규정”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바, 기존 직무범위와의 부합성, 직무관련성 등을 고려하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일반 부정수급자에 관한 범죄”의 경우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리 도입 당시 그 취지에 맞추어 부여되었던 직무범위이므로 법체계적 측면에서 관련법의 제·개정에 따라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자 등에 관한 범죄” 및 “이와 관련된 양벌규정”의 경우 부정수급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므로 개정안에 따라 부정수급 단속 공무원에게 이에 대한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직무관련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문 의 처
02-6788-5059

[참고자료 1] 특별사법경찰제도 개관

- 현행법상 사법경찰은 크게 ①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에 소속되어 범죄에 대한 일반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일반사법경찰과 ②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되어 특정한 영역의 범죄에 대하여만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 두 종류로 구분되고 있음.
- 특별사법경찰은 ①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된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고, ②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범죄 수사를 도모할 수 있는 등의 취지에서 1956년 도입되었고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2023. 12. 31. 기준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이 약 14,500명,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이 약 6,000명에 이르고 있음.

[참고자료 2] 기관별·분야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2023.12.31.기준)

1. 중앙행정기관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자료제공: 법무부 형사기획과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
1	기획재정부(관세청)	관세법 등 위반 범죄	501
2	기획재정부(국세청4)	조세 관련 범죄	5,273
3	법무부(교소도등)	교도소, 구치소 등 내에서 발생한 범죄	1,358
4	국방부(기무사등)	군용물, 군사기밀보호법, 병역법 등 위반 범죄	312
5	병무청	병역법 위반 범죄	40
6	소방청	소방기본법 등 위반 범죄	2,157
7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위반 범죄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9
8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과)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26
9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 범죄	1,128
10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사업법 위반 범죄	38
1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식품방역법 위반 범죄	208
1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위반 범죄	-
13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산림, 임산물, 수렵 관련 범죄	179
14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	광산보안법위반범죄	14
15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상표법 등 위반 범죄	45
16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과)	청소년보호법위반 범죄	4
17	환경부(국립공원공단)	환경 관련 위반 범죄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죄	600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
18	환경부(환경청)	환경 관련 위반 범죄	69
19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1,057
20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도로법 등 위반 범죄	60
21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457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법 등 위반 범죄	141
23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 범죄	165
24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어업자원보호법 위반 범죄	503
25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범죄	26
26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관리법 등 위반 범죄	18
2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약사, 보건범죄 위반 범죄	36
28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등 위반 범죄	12
29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설비 위반 범죄	22
30	대통령경호처	경호업무 수행 관련 범죄	28
31	행정안전부	안전분야 관련 범죄	3
32	환경부	환경 관련 위반 범죄	13
33	국토교통부	교통 등 불법행위 조사, 단속	4
34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범죄	25
35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	5
합 계			14,536

- 4) 기획재정부(국세청) :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조사공무원’으로서 조세범칙 혐의 유무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혐의자 등에 대해 심문·압수·수색·범칙 처분을 하는 등 사실상 특사경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명절차도 법무부 예규인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고 있어 관례적으로 특사경 인원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
1	서울특별시	식품, 공중위생 등 관련 범죄	400
2	부산광역시	〃	334
3	인천광역시	〃	371
4	대구광역시	〃	203
5	대전광역시	〃	172
6	광주광역시	〃	166
7	울산광역시	〃	235
8	세종특별자치시	〃	45
9	경기도	〃	730
10	경상남도	〃	404
11	경상북도	〃	595
12	충청남도	〃	583
13	충청북도	〃	528
14	전라남도	〃	465
15	전라북도	〃	273
16	강원특별자치도	〃	531
17	제주특별자치도	〃	33
합 계			6,068